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김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6
----------	-----

발의연월일 : 2022. 4. 13.

발의자 : 김지훈,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진희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재정지원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보조금 점검과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노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또는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이 조례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3조(재정지원) 제2호: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존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재정지원 대상·유형·규모 등에 따라 비용산정 방식이 상이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교통국 대중교통과장 김주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 9.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⑨ [생략]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